

고령군의회위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호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1. 12. 22.

발 의 자 : 성원환·김명국·이달호·

김선욱·배호임·배철현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과 징계기준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별표 제1호서식)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고령군의회위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의회위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검직신고)”를 “(검직신고 및 사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의장에게검직사항”을 “의장에게 검직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적용기준란 중 “출석정지”를 “출석정지, 제명”으로 하고, 비위의 정도란 중 “- 금고 미만 확정판결” 및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고령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 -----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전단신설 2020.05.27.>		제5조(겸직신고 및 사임) ① ----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		
②·③ (생략)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 의장에게 겸직사항--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⑤ (생략)

<신 설>

제10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②·③ (생략)

제12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⑤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
--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징계 등) -----

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 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1. 2. (생략)
3. 검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4. ~ 7.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4. ~ 7. (현행과 같음)

[별표1]

징계기준(제12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 면허정지 ○범법행위 - 금고미만 확정판결 ○가중 비리 관련 범죄행위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성폭력, 성희롱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공개사과, 출석정지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생략)		

[별표1]

징계기준(제12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 면허정지 ○범법행위 <삭제> ○가중 비리 관련 범죄행위 <삭제>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성폭력, 성희롱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